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961
- 발 의 자 : 김창수의원 외 10명
- 발 의 일 : 2017년 8월 11일
- 회 부 일 : 2017년 8월 16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정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위한 조례 등 법령상 근거 미비
- 나.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과 서울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 3. 주요내용

- 가.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 규정(안 제8조)
- 나.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 규정(제9조)
- 다.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등 규정(제15조)
- 라. 하정 청백리상 운영 등 규정(제24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결과(2018.8.21.~ 8.28)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렴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음.
- 본 제정안은 30개 조(條)로, 총칙(제1조~8조), 청렴정책자문위원회(제9조~제12조),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제13조~제17조), 청렴문화조성(제18조~제23조),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제24조~제2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내·외부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가. 총칙

-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고, 종합대책 수립 및 청렴 정책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의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조항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 투명시정 실현
제2조(정의)	공직자, 투자·출자·출연기관 의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
제4조(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 수립 추진)	청렴문화조성 기본 방향, 목표, 전략 등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교육, 호보, 체험, 실천, 사례연구 조사 등
제7조(협력체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전담조직 구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서울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수행사인(「부패방지권의 위법」)까지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의 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관련 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감사역량 제고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렴 문화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고, 부패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지방공무원법」제53조의 청렴의 의무와 같이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공무원법」제53조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안 제8조는 청렴정책의 전담조직을 구성한 후 청렴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원발의 조례로 집행부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 침해 소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청렴정책자문위원회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렴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조항	주요 내용
제9조(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의 자문을 위해 설치함.
제10조(위원회 구성)	15명 이내, 위원장 호선선출, 임기2년
제11조(위원회 운영)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의록 작성등
제12조(위원회 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안 제9조는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청렴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에 자문 및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렴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의 청렴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b>&lt; 청렴정책자문위원회 &gt;</b>
구성 : 학계 · 연구계 · 언론계 등 민간전문가 13인
출범 : 2016년 8월 24일(임기1년)
역할 :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시 자문 및 정책제안, 제도개선방안을 모색

-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sup>1)</sup>에 따른 위원회 구성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다.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 안 제3장은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처벌·규제 등으로 청렴의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과는 달리, 청렴자율준수제를 운영하여 사전예방 및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조항	주요 내용
제13조(청렴 자율준수제)	청렴자율준수제를 정의함.
제14조(청렴 자율준수담당관 지정·운영)	각 기관별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을 지정운영함.
제15조(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청렴리더쉽, 담당자지정, 예산확보, 교육등
제16조(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제17조(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제공 및 감사유예

####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14조는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을 자체 지정하여 안 제15조의 기관장의 청렴리더십, 청렴담당자 지정 및 예산확보, 부패요소 발굴 및 부패행위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기관장이 청렴 자율준수 담당관으로 지정될 경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도 있다는 점에서, 기관장을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으로 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청렴 자율준수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8조의 청렴정책 전담조직과 연계방안 마련 등 제도시행에 있어서 효과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라. 청렴문화조성

-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가 및 하부 조직의 청렴담당자를 지정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추진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조항	주요 내용
제18조(청렴문화조성 회의)	연1회이상, 청렴도, 부패요인 분석
제19조(청렴도 평가)	연1회, 내부평가 외부기관 의뢰
제20조(청렴도 조사)	연1회, 외부평가(시민), 전문기관 의뢰
제21조(청렴 서포터즈 구성 운영)	각 부서별 청렴·감사업무 담당자 지정
제22조(시민 청렴모니터단 구성 운영)	공개모집, 인·허가, 공사·용역 모니터링
제23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연1회 정기적 교육,

- 안 제18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와 부패취약 요인분석 등을 위해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성원 또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해 책임자, 실무자, 외부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의 제시와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구성방법 또는 당연직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2조는 시민 청렴모니터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인·허가, 공사·용역, 민원 처리과정 등 서울시정에 대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청렴문화조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청렴모니터단의 신청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하고 있고, 성인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신청이 가능한 바, 제도 시행에 있어 실효성있는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시정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인·허가와 공사용역 부분은 안전감사옴부즈만이, 민원처리과정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마.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

-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제정안으로 병합하려는 것으로, 청렴문화조성에 관련 정책을 하나의 조례로 관리·규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27조는 하정 청백리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상 후 다음날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고 있어, 청렴문화조성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